

# 플랫폼 노동, 노동법의 변화와 기본소득

2019. 11. 22.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

이 다 혜 (법학박사/미국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kerith@snu.ac.kr

## Main idea \_

기본소득은 '노동'의 입장에서 옹호될 수 있으며,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그로 인해 다가오는 노동법의 변화는 물론이며, 노동법이 처음 형성될 때의 그 취지와 기본 개념도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기본소득과 노동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 생각해 볼 문제들

- 기본소득과 노동은 서로 배치되는가? 몇 가지 부정적 견해와 반박
- 누가 ‘근로자’인가? 현존하는 법의 한계
-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
- 변화의 경향: 미국 캘리포니아 2018년 대법원 판결 “ABC test”
- 노동법의 변화와 기본소득의 연결고리
- Back to the basics: 노동에 대한 사상적 전개, 노동법의 본래적 의미로부터 알 수 있는 기본소득의 정당성
- 남는 문제?

# 기본소득과 노동은 배치되는가?

- 일하지 않으므로 주어지는 것이 기본소득이므로 노동과 무관, 기본소득 주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 합리적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심리적 거부감에 가까움,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증연구 있음 (cf. K. Widerquist)
- 기본소득과 노조? 기본소득이 노동의 단합을 약화시킨다?
  - 오히려 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미국 SEIU는 기본소득 지지 시작(cf. 앤디 스텐)

# 기본소득과 노동은 배치되는가?

- 기본소득은 기존의 노동체제, 노동법을 약화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자아실현 측면에 집중하여, 20세기에 노동체제가 기반한 '연대'의 정신을 흔들 수 있다는 반론.
  - 이러한 우려의 배경은 기본소득에 대한 우파적 지지-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대신 사회보장 축소하자는 것 -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cf. Marc de Vos: 기본소득을 통해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점차 축소하고 투자국가(investment state)로 나아가자고 주장하는데, 위험한 주장이며 기본소득 옹호론자도 동의하지 않는 주장임. Van Parijs도 기본소득은 건강보험 등, 공공재적 사회보장은 항상 필요하며 이를 대체하자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

# 누가 근로자인가? 현존하는 법의 한계

- 근로기준법 제2조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판례: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근로자라고 봄.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여기에 구속되어야, 업무 수행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 핵심 기준은 "종속" - 종속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인적 종속성 + 경제적 종속성 모두가 있어야 노동법의 근로자 범주에 확실히 포함됨.
- 19C말에 형성되고, 20C 초-중반 형성된 산업자본주의를 전제함, Taylor-Fordist 경영방식, 완전고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에 전제한 근로자상. 정규직, 사회보장, 정년퇴임, 남성 생계부양자를 전제로 한 근로자 모델.

#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노동하는데 노동자라 불리지 못하고…”

(20C 노동)

- 정해진 시간, 장소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감시와 처벌’ (cf. 푸코)

(21C 노동)

- 어디서나 노동, 실적기반 소득, ‘자기착취’ (cf. 한병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법 125조):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영역, 경제적 종속성만 있고 인적 종속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들. 골프장 캐디, 보험 모집인, 화물운송인(지입차주),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주로 특정 회사를 위해 일하면서도 근로자로는 인정받지 못함,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이라는 부분적 보호만을 제공받음, 법에서 열거하는 제한된 업종에만 한해.

#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난 수년간 배달앱 기사들 근로자성 부정되어 왔고, 작년에야 음식배달앱 기사 처음으로 특고로 산재만 인정 (2018 대법원 판결)
  -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근로자성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 '종속'의 모습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 ('스피드배달'사건 원심 판결문 중: "GPS가 없어 감독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등.)
  - 최근 택배기사노조, 플랫폼노동연대, 라이더유니온 등 결성되고 있으나 자발적인 움직임이고, 아직 노동법으로는 전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변화의 경향: 미국 캘리포니아 2018년 대법원 판결

Dynamex Operations v. Superior Court (2018) 4 Cal. 5th 903.

- 사실관계: 회사 정책으로 직접고용되지 않고 일하던 어플리케이션 물류회사 Dynamex 배달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등 준수하라며 노동법 소송,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줌.
- 주요 법리: 근로자 판단 법리를 대폭 간소화, ‘고용’의 의미를 인적 종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 간단한 “ABC 테스트”의 3요소를 사용자가 모두 입증해야만 진정한 자영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근로자로 간주.
- A: 사용자로부터 지배가 있는지, B: 사용자의 통상적인 영업경로에 속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C: 자기만의 독립된 사업을 따로 갖고 있는 사람인지. => ABC 모두를 충족해야만 자영인, 하나라도 아니라면 근로자.
- 질문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함 - ‘종속되었냐?’를 묻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운가를 물어 후자를 배제하는 방식.

# 변화의 경향: 미국 캘리포니아 2018년 대법원 판결

- 이 판결의 의미: Uber, Lyft 등 그간 문제되었던 킥 이코노미(gig economy) 플랫폼 노동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저임금, 산업재해, 고용보험 등 노동법을 적용받게 됨.
-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법제화되어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영업에서 근로자로 법적 지위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
- 현대 노동의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처럼 취급되는 사람들이 사실 자기 노동으로 생활한다는 점. 영세 자영업자, 특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업가가 아닌 노동자에 가깝다고 보아야 함.

# 기본소득과의 연결고리

- 노동법에서 근로자 개념은 '종속' 을 입증해야만 하는 방식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될 것임.
- '근로자-사용자'의 구분보다, '노동소득자-자본소득자'의 구분이 더 현실에 가까우며, 이러한 재구성이 의미있을 것임.
-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자의 소득을 보완하며, 노동과 자본 사이의 분배정의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노동소득 + 기본소득] v. [자본소득]?
- 우리 사회는 자본소득자의 존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 - 재벌 2세, 금수저를 부러워하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
- 자본소득은 인정하면서, 기본소득을 거부하는 것은 인식론적 편견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 노동에 대한 사상적 전개: '자유'의 증대

- 로마법 - “모든 인간은 자유인이거나 노예다”(Omnes homines aut liberi sunt aut servi). 「학설휘찬」(Digesta) D.1.5.3. - 신분제 사회에서의 노동: 보호받으려면 종속된 것이 기본이며, 이후 노동에 대한 사상의 전개는 이를 점차 해방해 가는 것.
- Anton Menger (1889) - 노동수익권(the 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 생존권(right to subsistence), 근로권(right to work) - 이상적으로는 노동가치가 그것을 생산한 노동자에게 그대로 귀속되어야 하나, 현실 대안으로 국가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생존권 관념 제시, 근로권은 보완적, 부차적 권리 - 생존권 보장이 우선, 고용은 그 다음 - 소득/노동이 반드시 연결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 Hugo Sinzheimer - (노동법원리, 1927) ‘종속노동’개념 처음으로 제시, 그런데 종속노동은 인간 노동 현실에 대한 묘사(description)일 뿐,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 또는 당위가 아님. 일하는 모든 사람은 신분제 폐지 이후 모두 자유인임을 강조.
- 우리는 보호받으려면 아직도 노예임을 입증해야 하나? 기본소득은 인간 노동의 본래적 모습, 즉 자유로우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을 위해 필요한 것.

# 남는 문제

- 기본소득과 비임금노동 - 돌봄노동, 자원봉사, 인공지능, 창의노동.
- 기존 노동법의 관심을 받지 못하던 위와 같은 모든 노동의 핵심은 창의성, 자율성, 인격적(비경제적)가치로 요약될 수 있음.
- 기본소득은 이들 노동을 돕고, 아렌트가 말하는 *vita activa*를 가능케 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음.